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73
----------	-------

발의연월일 : 2025. 8. 8.

발 의 자 : 김예지 · 우재준 · 성일종
서천호 · 박홍근 · 고동진
진선미 · 안철수 · 김성원
김소희 · 조경태 · 김도읍
서범수 · 최수진 · 고민정
한정애 · 박덕흠 · 이현승
김선교 · 강경숙 · 김승수
서미화 · 김용태 · 김미애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소유자등’으로 정의하고,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의 개념을 넘어 인간과 정서적·기능적 유대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 동반자에 가까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특히 봉사동물은 구조, 탐지 활동 등 중요한 국가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소유라는 개념 안에서만 다루고 있어 동반자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봉사동물은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 전문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만, 은퇴 후에는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을 기존의 ‘소유자등’과 구분되는 ‘동반자등’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봉사동물인 ‘세중’의 인명구조견 인증일인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지정하며,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제4조의3 및 제16조의2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동반자등”이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봉사동물·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7항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 및 동반자등”으로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봉사동물의 날) ①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의 사회적 기여를 국민에게 알리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봉사동물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봉사동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 및 동반자등”으로 한다.

제3장제1절에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① 봉사동물의 동반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절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봉사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 중 “소유자등”을 “동반자등”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소유자등”을 “동반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 <u>동반자등</u> ”이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봉사동물·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 13. (생략)	3. ~ 13.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⑥ (생략)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u>소유자등</u> 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신설></u>	⑦ <u>소유자 및 동반자등</u> ----- ----- ----- -----.
	제4조의3(봉사동물의 날) ①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의 사회적 기여를 국민에게 알리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3일을 봉사동물의 날로 한다.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
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
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중
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생 략)

② · ③ (생 략)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③ (생 략)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 략)

⑤ (생 략)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른 취지를 고려하여 기
념행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봉사동물 운영 및 지원에 관
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유자 및 동반자등-----

-----.

1. ~ 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봉사동물 및 은퇴봉사
동물에 대한 지원) ① 봉사동
물의 동반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u>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봉사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u> <u>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 범위 및 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①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생 략) 3. 반려동물 <u>소유자등</u> 에 대한 교육 4. (생 략) ② (생 략)	제30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 <u>동반자등</u> -----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생 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반려	제32조(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동물행동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5. (생략) 6.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의 <u>소유자등</u>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알선·유인하거나 강요한 경우 ③ (생략)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동반자등</u>----- ----- ----- ③ (현행과 같음)
---	---